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1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의겸 · 김동아 · 김용민
박지원 · 김한규 · 서영교
김남희 · 박균택 · 이성운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를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 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 ----- -----
제5조(<u>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u>지방검찰청검사장</u>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	제5조(<u>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u>)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 -----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3. (생략)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① (생략)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

1.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공소청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

----- 지방공소청장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 first row begins with a small dot at its left end.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providing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u>지방검찰청검사장</u>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u>지방검찰청검사장</u>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u>지방검찰청 검사장</u>은 이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 ----- ----- ---- <u>지방공소청장</u>----- ----- ----- ----- -----. ② ----- ----- ----- <u>지방공소청장</u>----- ----- ----- ----- -----.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u>지방공소청장</u>----- ----- ----- ----- ----- ----- -----.
---	--